

제 1686 호  
1992. 9. 23.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이 상 배  
편집인: 공 보 관 이 상 진  
전화: 791-8111~3  
인쇄: 한국일보출판(인쇄)주식회사  
전화: 273-8111~3

# 시 보

## 차 례

● 조 례	
제 2950 호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 2
제 2951 호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새과세인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4
제 2952 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새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중개정조례 ..... 4
제 2953 호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5
제 2954 호	서울특별시건축특별중개정조례 ..... 5
제 2955 호	서울특별시주차환경개선사업시행특별중개정조례 ..... 6
제 2956 호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7
제 2957 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중개정조례 ..... 7
제 2958 호	서울특별시금수특별중개정조례 ..... 8
● 규 칙	
제 2495 호	서울특별시산림개발제한구역보호조소감시원근무규칙에지규칙 ..... 11

공 발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너와내가 아끼물자 우리살림 살찌운다"  
1967

조 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물이에 공포한다.

1992. 9. 23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950호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사항 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고, 근무상한 연령 연장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 제1호 중 인력전담원단의 6급 상당관의 임용자격란 제4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통계조사원단의 임용자격란 제4호 중 "2년"을 "3년"으로, 개발계장관의 임용자격란 제2호 중 "3년"을 "4년"으로 하며, 지도사관의 6급상당관의 임용자격란 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동란의 7급상당관의 임용자격란 제4호 중 "2년"을 "3년"으로, 동란의 8급상당관의 임용자격란 제4호 중 "1년 6월"을 "2년"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문화재요원단의 5급상당관의 임용자격란 제2호 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영화제작감독관의 임용자

란 제4호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중 한강안전관리대장관의 임용자격란 제2호 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한강안전관리대원단의 6급상당관의 임용자격란 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동란의 7급상당관의 임용자격란 제2호 중 "3년 6월"을 "5년"으로 하며, 화생방지도관관의 임용자격란 제2호 중 "3년"을 "4년"으로, 화생방지도원단의 6급상당관의 임용자격란 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비상계획과 비상대비인력관의 임용자격란 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중 전산기획관관의 임용자격란 제3호 중 "4년"을 "5년"으로 하고, 동호의 직명(위) 및 업무구분란 중 "전산처리관"을 "전산처리과장, 전산개발과장, 전산관리과장"으로, 동 전산처리과장, 전산개발과장, 전산관리과장관의 임용자격란 제4호 중 "3년"을 "4년"으로 하며, 동호 중 전산처리사관, 기계처리사관, 전산전기사관, 전산통신사관, 전산기계사관 및 천공원관을 삭제한다.

(별표 1) 제5호 중 교무과장관의 임용자격란 제1호 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지도과장관의 임용자격란 제1호 중 "3년"을 "4년"으로, 기획계장관의 임용자격란 제1호 중 "2년"을 "3년"으로, 교무계장관의 임용자격란 제1호 중 "2년"을 "3년"으로, 지도계장관의 임용자격란 제1호 중 "2년"을 "3년"으로, 지도교사관의 7급상당관의 임용자격란 제4호 중 "2년"을 "3년"으로, 부녀상담원단의 6급상당관의 임용자격란 제4호 중 "2년"을 "3년"으로, 동란의 7급상당관의 임용자격란 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동란의 8급상당관의 임용자격란 제3호 중 "1년 6월"을 "2년"으로, 가정상담원단의 6급상당관의 임용자격란 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동란의 7급상당관의 임용자격란 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아동복지지도원단의 6급상당관의 임용자격란 제3호 중

<p>"2년"을 "3년"으로, 동란의 7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상당실장란 6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p> <p>〈별표 1〉 제8호 중 항공사진사란의 임용자격란 제5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판독사란의 6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5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p>		<p>〈별표 1〉 제9호 중 공해측정장비관리요원란의 임용자격란 제6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공해측정기사란의 7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p> <p>〈별표 1〉 제11호 중 시의회전문위원란 다음에 속기사란 및 편집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근 거
속 기 사	7급상당	회의 목적	1. 한글속기사자격증 1급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2. 별정직 8급상당으로 당해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8급상당	"	1. 한글속기사자격증 1급 소지자 2. 한글속기사자격증 2급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별정직 9급상당으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9급상당	"	1. 한글속기사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편 집 원	7급상당	회의 목적 교정및편집	1.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교정·편집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2.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교정·편집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교정·편집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4. 일반직 8급 이상으로서 공무원 제직경력 6년 이상인 자 5. 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으로서 교정·편집 및 속기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8급상당	회의 목적 교정및편집	1. 4년제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2.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교정·편집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교정·편집 속기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4. 공무원 제직경력 6년 이상인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9. 23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951호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  
제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 6.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9. 23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952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공단체·국민주택자금용  
용자받은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  
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공  
공단체및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건축주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을  
“건축주 또는 주택조합이 분양할 목적으  
로 건축한”으로 하며, 동조 제4호 및 제5  
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동조  
에 제4호,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조합”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설립인가를 받  
은 조합을 말한다.

5. “조합주택”이라 함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  
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획  
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연립주택·집  
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8. “조합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조합주택과 당해 조합주  
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  
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세면제) ①건축주가 건축한 공동  
주택용 부동산과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  
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  
만, 건축주가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준  
공경사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  
의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  
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  
기 위하여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사실상의 취득 또는  
등기 등목명의로 불구하고 주택조합에 대  
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  
만, 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되지 아

니하는 조합주택으로서 1구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조합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축주나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를 각각 “건축주나 임대주택사업자 및 주택조합으로부터”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로부터 2월”을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나 주택조합이 보존등기한 날로부터 2월”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9. 23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㉑

●서울특별시조례제2953호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

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서울특별시립 노동복지회관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9. 23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㉑

●서울특별시조례제2954호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해일·홍수·산사태·토사 및 저반붕괴 등의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에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29조의2 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식물관련시설

7. 참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2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1층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실바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허용되는 건축물

2. 단독주택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참고시설(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5.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6.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폐차장

7. 전시장 중 동식물원

8. 관광휴게시설(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③제3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도시계

<p>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용 신속(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1층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p> <p>1. 단독주택</p>	<p>2. 공동주택 3. 근린공공시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p> <p>제49조의3의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아파트 형 공장의 건축규모는 연면적 합계 1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p>
<p>용도지역구분</p> <p>일반주거지역</p> <p>준주거지역</p> <p>근린상업지역</p> <p>자연녹지지역</p>	<p>아파트형 공장의 연면적 합계</p> <p>3천제곱미터</p> <p>7천5백제곱미터</p> <p>1만제곱미터</p> <p>2천제곱미터</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해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1992. 9. 23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p> <p>●서울특별시조례제2955호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5조”를 “건축법시행규칙 제</p>	<p>30조”로 한다.</p> <p>제12조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47조제1항”으로 한다.</p> <p>제13조 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47조”를 “건축법시행령 제62조”로 한다.</p> <p>제14조제1항 중 “건축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호 중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에 대한 기준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로 한다.</p> <p>동조제2항 중 “건축법 제23조의4”를 “건축법 제59조”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를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호”로 한다.</p> <p>동조동항제1호 중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4”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4”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5”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5”로 한다.</p>

제15조 중 "건축법 제25조"를 "건축법 제 42조"로 한다.

제16조 중 "건축법 제27조제1항"을 "건축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건축법 제30조제1항"을 "건축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건축법 제39조"를 "건축법 제 47조"로 한다.

제19조 중 "건축법 제3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건축법 제40조제1항"을 "건축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 중 "건축법 제41조"를 "건축법 제 5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호"로 한다.

제22조 중 "건축법 제41조의2"를 "건축법 제50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조례에 의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1992. 9. 23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956호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관리실장
- 2. 종합건설본부장
- 3. 지하철건설본부장
- 4. 도시계획국장
- 5. 도로국장

- 6. 교통국장
- 7.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
- 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 9.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국장
- 10. 시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화석과 경합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자

제5조제1항 중 "서기 2인"을 "서기 1인"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교통국 교통기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기획과 교통운영계장이 된다.

제7조제4항 중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1992. 9. 23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957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시장은 자동차 10부제운행(자동차 등 록번호의 끝자리수가 운행일자와 같은 때에 운행하지 않는 것)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월정기권을 이용하는 차량이 10부제운행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1회 주차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0부제운행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의 주 차 장			
	2시간까지 (1구획 30분)	2시간초과 (1구획 30분)	1회 주차 (1구획 30분)	1일주차권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1급지	1,000원	2,000원	800원	1만원	13만원	6만5천원
2급지	400원	800원	300원	3천600원	8만원	4만원
3급지	300원	-	200원	3천원	3만4천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제3조 규정의 월정기권을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9. 23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958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제7항으로, 동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㉔1개의 양수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이하 "해당업종"이라 한다)의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요율을 산정한다.

1. 총사용량이 해당업종의 기본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업종의 기본량을 초과한 사용량 중에서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을 적용한다.

2. 총사용량이 해당업종의 기본량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적용한다.

3. 제1호 중 "세대"는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한하며, 1인 1세대·하숙생·자취생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㉕1주택(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분양단위를 말한다)에서 단일양수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세대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양수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호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각각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며, 사용총량을 사용세대 또는 사용호별로 산출된 평균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결산한다.

〈별표 2〉 가. 급수사용료 요율표 및 나. 급수종별구분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종 적용액)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육탕용 2종의 적용을 받는 업종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번째 월정결제침분까지는 종전규정 제1종은 이 조례 영업용 2종으로, 종전규정 제2종은 이 조례 영업용 1종으로 적용한다.

③(급수사용료 적용액) 이 조례 시행일부터 최초의 정액결제침분까지의 급수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  
가. 급수사용료 요율표

구분 업종	1개월 기본요금		초 과 사 용 료	
	기본수량 (세제곱미터)	기본요금 (원)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가 정 용	10	780	11~30 31~50 51 이상	110 220 270
영 업 용 1 종	20	2,700	21~50 51~100 101~300 301 이상	300 320 340 360
영 업 용 2 종	30	10,500	31~50 51~100 101~200 201~300 301 이상	450 470 490 630 820
육 탕 용 1 종	500	63,000	501~1,000 1,001~2,000 2,001~3,000 3,001 이상	150 170 190 200
육 탕 용 2 종	200	100,000	201~500 501~1,000 1,001~2,000 2,001~3,000 3,001 이상	820 930 1,000 1,030 1,050
공 공 용	30	3,000	31 이상	210

  

나. 급수종별 구분표

<p>1. 가정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 사용으로 급수하는 것</li> <li>○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li> <li>○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li> <li>○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li> </ul> <p>2. 영업용1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설 소화전</li> </ul> <p>3. 영업용2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점영업</li> <li>○ 공연장</li> <li>○ 숙박업</li> <li>○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li> <li>○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대 형점, 시장(상가 포함)</li> <li>○ 차량판매정비(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 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li> <li>○ 예식장</li> </ul>
---	---

- 학원(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 사진현상소
-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건당포 제외)
- 발전소
- 이발소(미장원 제외)
-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화폐, 식목업
-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 이상 건물(의료기관 제외)), 오피스텔
- 도살장, 경육점
- 양조업, 제빙업, 제분업(방앗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제조업, 의약품·화공약품·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 합성수지 제조업, 페인트류 제조업, 가구류 제조업(자재가공 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 제조 포함)
- 염색업 및 섬유류 제조가공업, 식료품 제조가공업, 피혁 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

- 에 한함)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 단계 요율 적용)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 4. 육탕용1종
  -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5. 육탕용2종
  - 특수육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 가족탕업, 한증탕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육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 6. 공공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 학교
  - 정당
  - 병영
  - 신문사, 방송국
  -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노인복지회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여가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규 칙

서울특별시산업및개발제한구역보호초소감  
시원근무규칙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2. 9. 23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

●서울특별시규칙제 2495 호  
 서울특별시산림및개발제한구역보호초소  
 감시원근무규칙폐지규칙  
 서울특별시산림및개발제한구역보호초소감  
 시원근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92.10. 1부터 시행한다.